

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2. 1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7. 2. 16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,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(안 제6조)

-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(별표 2)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
-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

나.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(안 제7조)

-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(별표 2)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,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.(「지방자

치법」 제22조 위반)

-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(흡연구역 ⇒ 흡연실) 위해 삭제
-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

다. 과태료 규정 정비함(안 제10조)

-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
 - 근거: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)
 - 위임내용: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에 금연구역 표시와 흡연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됨으로 실효성이 없고
- 나. 또한,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은 위법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며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